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	

군 책 임 운 영 기 관 의 지 정 · 운 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국방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을 공고한 후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 다시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하고,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5. 2. 26. ~ 4. 7, 4. 00. ~ 0. 00.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.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접수 20일 전에”를 “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”로, “공고하여야 하며”를 “공고해야 하며”로, “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”를 “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”로 한다.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.

제22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시험”을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

4.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) ① 기관장(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, 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<u>공고하여야 하며</u> 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<u>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(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</u> ----- ----- ----- <u>공고해야 하며</u> ----- ----- ----- <u>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</u>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

②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<u>제1항</u>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<u>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채용시험</u>으로는 결원 보충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<u><신설></u>	<u>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.</u>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경력경쟁채용시험</u>----- ----- ----- ----- 4. 「<u>군무원인사법</u>」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5317